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802

제출년월일 : 2022. 3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▢ 제안이유

○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○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 함. (안 제8조)

▢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▢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▢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▢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▢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▢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2. 2. 7. ~ 2022. 2. 17.(10일간)

▢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5만원”을 “7만원”으로 한다.

가. 참전유공자

1) 80세 이상: 월 11만원

2) 80세 미만: 월 9만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김 유 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팀장 두 현 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수 진 (행정 2861)

〈 붙임 2 〉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당 등 지급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수당 등 지급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
1. 보훈명예수당	1. ----------
가. 참전유공자 : 월 7만원	가. 참전유공자 1) 80세 이상: 월 11만원 2) 80세 미만: 월 9만원
나.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: 월 5만원	나. ---------- 7만원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